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2021. 11. 9 선고 2020재나37 판결 [부당이득금반환]

전 문

원고(재심원고) A

피고(재심피고) B

변 론 종 결 2021. 10. 19.

판 결 선 고 2021. 11. 9.

제1 심 판 결 춘천지방법원 속초지원 2019. 9. 3. 선고 2019가소1059 판결

재심대상판결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2020. 2. 11. 선고 2019나32146 판결

주 문

1. 이 사건 재심의 소를 각하한다.
2. 재심소송비용은 원고(재심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 항 소 취 지 및 재 심 청 구 취 지

재심대상판결 및 제1심판결을 모두 취소한다. 피고(재심피고, 이하 ‘피고’라 한다)는 원고(재심원고, 이하 ‘원고’라 한다)에게 23,859,000원과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분 송달일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 유

1. 기초 사실

아래 각 사실은 이 법원에 현저하거나 기록에 의하여 인정된다.

가.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한 춘천지방법원 속초지원 C 부동산임의경매절차에서, 집행법원은 2017. 11. 13. 근저당권자인 피고에게 23,859,000원을 배당하는 내용의 배당표를 작성하였다.

나. 원고는 위 경매사건의 배당기일에 출석하여 피고의 배당액 전액에 대해 이의한 후 2017. 11. 17. 춘천지방법원 속초지원 2017가단2450호로 배당이의의 소를 제기하였다.

다. 위 법원은 2018. 7. 20. 피고 명의의 근저당권의 원인채권이 소멸하였다는 등의 원고 주장이 이유 없다고 판단하여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는 판결을 선고하였고, 이에 원고가 항소 및 상고하였으나, 모두 기각되어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라. 원고는 피고를 상대로 춘천지방법원 속초지원 2019가소1059호로 부당이득금반환의 소를 제기하였는데, 위 법원은 2019. 9. 3. 다음과 같은 이유로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는 판결(이하 '제1심판결'이라 한다)을 선고하였다.

원고는,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대한 피고 명의 근저당권은 통정허위표시로서 무효인 근저당권설정계약에 기한 것이거나 그 피담보채권이 부존재하거나 소멸하였으므로, 피고는 위 C 부동산임의경매절차에서 배당받은 23,859,000원을 부당이득으로서 원고에게 반환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채권자가 제기한 배당이의의 소의 본안판결이 확정된 때에는 이의가 있었던 배당액에 관한 실체적 배당수령권의 존부의 판단에 기판력이 생기므로, 배당이의의 소에서 패소의 본안판결을 받은 당사자가 그 판결이 확정된 후 상대방에 대하여 위 본안판결에 의하여 확정된 배당액이 부당이득이라는 이유로 그 반환을 구하는 소송을 제기한 경우에는, 전소인 배당이의의 소의 본안판결에서 판단된 배당수령권의 존부가 부당이득반환청구권의 성립 여부를 판단하는 데에 있어서 선결문제가 된다고 할 것이므로, 당사자는 그 배당수령권의 존부에 관하여 위 배당이의의 소의 본안판결의 판단과 다른 주장을 할 수 없고, 법원도 이와 다른 판단을 할 수 없는바(대법원 2000. 1. 21. 선고 99다3501 판결 등 참조), 원고가 피고를 상대로 배당이의의 소를 제기하여 패소의 본안판결을 받아 그 판결이 확정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으므로, 결국 원고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마. 원고는 제1심판결에 불복하여 이 법원 2019나32146호로 항소를 제기하였는데, 그 항소심인 이

법원은 2020. 2. 1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는 판결(이하 ‘재심대상판결’이라 한다)을 선고하였다. 바. 원고가 위 항소기각 판결에 대하여 상고를 제기하지 않아 재심대상판결은 그대로 확정되었다.

2. 원고의 주장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대한 피고 명의의 근저당권은 통정허위표시로서 무효인 근저당권설정계약에 기한 것이거나 그 피담보채권이 부존재하거나 소멸하였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23,859,000원을 부당이득으로 지급할 의무가 있는데도 재심대상판결은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였으므로, 재심대상판결에는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제9호의 “판결에 영향을 미칠 중요한 사항에 관하여 판단을 누락한 때”에 해당하는 재심사유가 있다.

3. 판단

가. 관련 법리

- 1) 재심사유의 하나인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제9호의 판단누락이라 함은 당사자가 소송상 제출한 공격방어방법으로서 판결에 영향이 있는 것에 대하여 판결이유 중에서 판단을 표시하지 아니한 때를 가리키며, 그 판단이 있는 이상 설령 그 판단 내용에 잘못이 있다거나 판단에 이르는 이유가 소상하게 실시되어 있지 않거나 또는 그 주장을 배척한 근거를 일일이 개별적으로 설명하지 아니하더라도 이를 위 규정에서 말하는 판단누락이라고는 볼 수 없다(대법원 2008. 5. 29. 선고 2008재다14 판결 등 참조).
- 2) 한편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단서의 규정에 비추어 볼 때, 상고이유에서 주장하여 상고심 판결의 판단을 받은 사유로써는 확정된 그 원심판결에 대하여 재심의 소를 제기할 수 없고, 또한 만일 그 원심판결에 판단누락이 있다면 그 판결의 정본을 송달받아 판결이유를 읽으면 당장 알 수 있는 것이므로 달리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원심판결의 정본을 송달받았을 때에 그 판단누락이 있음을 알 수 있어 이를 상고이유로 주장할 수 있었을 것인데 이를 알고도 주장하지 않은 때에는 역시 재심의 소를 제기할 수 없을 것인바, 결국 달리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상고심에서 판단누락을 상고이유로 주장하였는지 여부에 관계없이 그 원심판결(항소심 판결)에 대하여는 판단누락을 적법한 재심사유로 삼을 수 없다 할 것이다(대법원 2006. 1. 12. 선고 2005다58236 판결, 대법원 2007. 6. 29. 선고

2006다4205 판결 등 참조). 나아가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단서의 ‘이를 알고도 주장하지 아니한 때’라고 함은 재심사유가 있는 것을 알았음에도 불구하고 상소를 제기하고도 상소심에서 그 사유를 주장하지 아니한 경우뿐만 아니라, 상소를 제기하지 아니하여 판결이 그대로 확정된 경우까지도 포함하는 것이다(대법원 1991. 11. 12. 선고 91다29057 판결 등 참조).

나. 구체적 판단

재심대상판결 정본이 2020. 2. 13. 원고에게 송달된 사실은 이 법원에 현저하고, 원고가 재심대상판결에 대해 대법원에 상고하지 않아 재심대상판결이 확정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다. 원고가 주장하는 판단누락이 존재한다면 원고는 재심대상판결의 정본을 송달받아 판결이유를 읽으면 알 수 있어 이를 상고이유로 주장할 수 있었을 것인데, 원고는 이를 알고도 상고를 제기하지 않아 재심대상판결이 확정되었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재심의 소를 제기할 수 없다. 따라서 이 사건 재심의 소는 재심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것을 그 사유로 한 것으로서 부적법하다. 또한, 원고는 재심대상판결에서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대한 피고 명의의 근저당권은 통정허위표시로서 무효인 근저당권설정계약에 기한 것이거나 그 피담보채권이 부존재하거나 소멸하였다고 주장하였고, 재심대상판결과 제1심판결에서 배당수령권의 존부에 관하여 배당이의의 소의 본안판결의 판단과 다른 판단을 할 수 없다는 이유로 원고의 위 주장을 받아들이지 아니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다. 따라서 재심대상판결과 제1심판결에서 해당 쟁점들에 대한 판단이 모두 이루어진 이상 원고가 주장하는 간접사실이나 사정들에 대하여 이를 배척하는 이유를 일일이 개별적으로 설명하지 아니하였더라도 재심대상판결에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제9호의 판단누락이 있다고 할 수도 없다.

4.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재심의 소는 부적법하여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백대현, 판사 이재민, 판사 고병용

별지

1. 강원 양양군 D 잡종지 456㎡
2. 강원 양양군 E 답 1,269㎡. 끝.

